

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 UBS 파워 1.5 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1 년 05 월 08 일

4. 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 2 조(용어의 정의) |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8 .(생략) <신설> |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~8 .(생략, 현행과 동일) 9.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란 법시행령 제 2 조제 7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. |
| 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| ①(생략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6. (생략) <신설> | ① (생략, 현행과 동일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.~6. (현행과 동일) 7.고난도금융투자상품 |

[간이투자설명서]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--|-------|-------|
|-----|-------|-------|

| | <p>운용전문인력 (생략)</p> <p>주요투자 위험 <추가></p> | <p>운용전문인력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</p> <p>주요투자 위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27 451 1435 107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32 457 1024 485">구 분</th> <th data-bbox="1024 457 1430 485"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32 701 1024 884">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</td> <td data-bbox="1024 491 1430 1066"> <p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|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 | <p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| | | | | |
|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 | <p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p> | | | | | |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| 구 분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
| <p>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</p> | <p><신설></p> | <p>13. 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라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 |
|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| 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신설> | 2.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”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입니다. |
|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(추가) 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21 년 05 월 08 일 -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*고난도금융상품제도 시행일은 2021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|
|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생략) 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(운용경력, 운용현황, 수익률 업데이트) |
|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증권(주식파생형)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 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: 증권(주식파생형) 투자신탁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전환형, 고난도금융투자상품 |
|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<신설> |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”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할 수 있으며,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입니다. |

| <p>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</p> |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 <신설></p> |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24 317 1435 1018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28 323 1019 359">구 분</th> <th data-bbox="1019 323 1430 359">투자위험의 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28 596 1019 793"> <p><u>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에 대한 위험</u></p> </td> <td data-bbox="1019 365 1430 1012"> <p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| <p><u>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에 대한 위험</u></p> | <p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p> |
|---|---|--|-----|-------------|---|---|
| 구 분 |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| | | | | |
| <p><u>고난도 금융투 자상품 에 대한 위험</u></p> | <p>이 투자신탁은 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」에 따른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에 해당되며,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2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권, 숙려기간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.</p> | | | | | |
| <p>제 2 부 집합투자기구 에 관한 사항</p> |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생략)</p> | 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동종유형총보수 업데이트)</p> | | | | |
| <p>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| 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</p> | <p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</p> | | | | |
| <p>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| <p>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~(3) (생략) <신설></p> | <p>1.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바.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(1)~(3) (생략, 현행과 동일) <u>(4) 이 집합투자기구는</u>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자는</u> <u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및</u> <u>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에</u> <u>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 및</u> <u>행사할 수 있습니다.</u> <u>①판매회사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</u></p> | | | | |

| | | |
|--|--|---|
| | | <p><u>하며,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<u>②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(이하 "청약등"이라 합니다)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숙려기간"이라 합니다)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<u>③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. 투자자는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④판매회사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,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,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, 숙려기간동안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</u></p> <p><u>⑤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여야만 청약등이 집행됩니다.</u></p> <p><u>⑥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</u></p> |
|--|--|---|